

# 기부금품 관리 규정



# 기부금품 관리 규정

제정 2023. 10. 27.

**제 1 조(목적)** 이 규정은 세종특별자치시장애인체육회(이하 “장애인체육회”라 한다)로 기부되는 기부금품의 접수절차 및 사용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장애인체육회에 대한 기부를 활성화시키고 접수된 기부금품이 적정하게 사용할 수 있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기부금품이라 함은 반대급부 없이 취득하는 금전 또는 물품을 말한다.
2. 일반기부금품이라 함은 기부 조건의 지정이 없는 기부금품을 말한다.
3. 지정기부금품이라 함은 지원대상자 또는 사용용도를 지정한 기부금품을 말한다.

**제 3 조(적용범위)** 이 규정은 장애인체육회에서 처리하는 기부금품 관리 및 기부금영수증 발급에 대하여 이를 적용한다.

**제 4 조(다른 규정과의 관계)** 장애인체육회의 기부금품 관리에 관하여는 관계법령 등 다른 법규에서 특별히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 5 조(기부금품의 종류)** 기부금품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1. 일반기부금품
2. 지정기부금품

**제 6 조(기부금품의 접수 및 보관)** ① 시장·군·구청 및 가맹경기단체가 기부자로부터 기부신청을 받아 장애인체육회에 접수를 요구하는 기부금품의 경우는 관련 부서의 장이 확인한 후 운영지원팀장이 접수한다.

② 지정기부금품의 지정 취지가 「기부금품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및 「공직선거법」이나 장애인체육회의 규정을 위반하는 경우 그 사실을 기부자에게 설명하고 「기부금품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및 「공직선거법」이나 장애인체육회의 규정을 위반하지 아니하게 지정하도록 요구하거나 그 지정을 철회하도록 요구하여야 한다. 기부자가 이에 응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기부금품을 접수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제 7 조(기부신청)** 장애인체육회에 기부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사항을 기재한 기부금품 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를 제출하여야 한다.

1. 기부금품 또는 기부재산의 표시
2. 기부자의 성명(법인명) 및 주소(소재지), 주민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
3. 지정기부금품일 경우에는 기부조건

**제 8 조(기부금품 영수증의 발급 및 장부비치)** ① 기부금품을 접수한 경우 접수자는 기부금품의 접수사실을 장부에 기재하고, 부서장의 승인을 받아 그 기부자에게 영수증을 교부하여야 하며, 기부금품 영수증은 발급한 날로부터 5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기부자가 성명을 밝히지 아니한 경우 등 기부자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익명의 기부금품 영수증을 발급하여 장애인체육회에 보관하여야 한다.

② 장애인체육회 및 시장장애인체육회, 가맹경기단체에 기부하는 지정금품에 대하여 기부금의 수입 및 지출내역을 작성 보관하고, 기부 대상과 사용목적을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기부물품 관리대장 장부(별지 제2호 서식)를 비치하여 관리한다.

**제 9 조(기부물품 가액 산정)** ① 금전이 아닌 물품 형태로 접수 받은 경우 당해 기부물품의 가액은 이를 접수한 때의 시가로 기부가액을 산정하며 시가가 장부금액보다 낮은 경우에는 장부금액에 의한다.

② 시가는 공공기관이 제공하는 공신력 있는 물가정보 또는 기부자가 제시하는 매입증빙서류상의 가액에 의하여 산정하되, 해당 기부물품의 가격이 없거나 중고물품의 경우에는 동일하거나 유사한 물품의 최근 거래가액을 조사하여 가액을 산정하고 최근 거래가액도 알 수 없는 경우에는 기부자가 제공하는 원가자료에 의한다.

**제10조(기부금품의 채납 결정 및 통지)** ① 세종특별자치시장애인체육회 회장(이하 “회장”이라 한다)은 후원협약에 따른 기부금품의 경우 기부 신청일로부터 2주일 이내에 기부금품 채납 여부를 결정하고 이를 즉각 기부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회장은 기부금품 채납 여부 결정시 해당 기부금품의 후원 조건이 장애인체육회 규약의 고유목적사업에 합당한지 여부와 이에 관련된 제반사항을 검토하여 기부금품의 채납여부를 결정한다.

**제11조(기부금품의 회계처리)** 기부금품은 장애인체육회 자체회계의 수입 및 지출로 처리한다.

**제12조(기부금품의 사용)** 회장은 일반기부금품을 기부 목적과 대상을 지정하여 기부금품을 사용할 수 있다. 단, 관계 법령 및 규정의 고유목적사업, 기부자의 기부취지등 위반여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감사의 의견을 고려한 후 지정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 부 칙<2023. 10. 27.>

제 1 조(시행일) 이 규정은 이사회의 의결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 서식]

### 기부금품 신청서

- 성 명(법인명) :
- 주민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 :
- 주 소(소재지) :
- 기부내용

| 순번  | 품 명 | 규 격 | 수 량 | 단 가 | 금 액 | 비고 |
|-----|-----|-----|-----|-----|-----|----|
| 1   |     |     |     |     |     |    |
| 2   |     |     |     |     |     |    |
| 3   |     |     |     |     |     |    |
| 4   |     |     |     |     |     |    |
| 5   |     |     |     |     |     |    |
| 6   |     |     |     |     |     |    |
| 7   |     |     |     |     |     |    |
| 8   |     |     |     |     |     |    |
| 9   |     |     |     |     |     |    |
| 10  |     |     |     |     |     |    |
| 합 계 |     |     |     |     |     |    |

- 기부조건(지정기부일 경우에만 기재함)

위와 같이 기부하고자 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세종특별자치시장애인체육회장 귀하**

